

202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시험명	직렬(직류)	직급	선발예정인원	시험과목	
총 계			210명		
제1회 임용 시험 (3.14.)	소 계		3명		
	경력 경쟁	수의연구직(수의)	연구사	3명	필기시험 없음(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)
제2회 임용 시험 (6.22.)	소 계		193명		
	행정직 (일반행정)	일 반	9급	62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
		자소득층		6명	
		장애인		7명	
	세무직(지방세)		9급	13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
	전산직(전산)		9급	8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
	사회복지직 (사회복지)	일 반	9급	4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
		장애인		1명	
	사서직(사서)		9급	5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
	공업직(일반기계)		9급	8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
	공업직(일반전기)		9급	7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기기기
	공업직(일반화학)		9급	6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
	농업직(축산)		9급	2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가축사양, 가축육종
	녹지직(산림자원)		9급	4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림, 임업경영
보건직(보건)		9급	1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	
간호직(간호)		8급	1명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	

시험명	직 렬(직류)		직급	선발예정인원	시 험 과 목	
제2회 임용 시험 (6.22.)	공개 경쟁	환경직(일반환경)		9급	6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, 환경공학개론
		시설직(도시계획)		9급	7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도시계획개론, 토지이용계획
		시설직(일반토목)		9급	14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
		시설직(건축)		9급	5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건축계획, 건축구조
		시설직(지적)		9급	10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적측량, 지적전산학개론
		방재안전직(방재안전)		9급	2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
		방송통신직(통신기술)		9급	6명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
	경력 경쟁	수의직(수의)		7급	5명	필기시험 없음(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)
		의료기술직 (의료기술)	방사선	9급	2명	필수(3) : 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
물리치료			1명		필수(3) : 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	
제3회 임용 시험 (11.2.)	소 계			13명		
	공개 경쟁	행정직 (일반행정)		7급	3명	필수(6) : 국어(한문 포함)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영어(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선택(1) :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역개발론 중 1과목
	경력 경쟁	보건연구직(공중보건)		연구사	4명	필수(2) : 보건학, 역학 선택(1) : 환경보건학
		환경연구직(환경)		연구사	3명	필수(2) : 환경공학, 환경화학 선택(1) : 대기오염관리
		공업직 (일반기계)	기술계 고 졸	9급	1명	필수(3) : 물리, 기계일반, 기계제도
		공업직 (일반전기)			1명	필수(3) : 물리, 전기이론, 전기기기
		시설직 (일반토목)			1명	필수(3) : 물리, 토목일반, 측량
기타	의무직(일반의무)		5급	1명	※ 별도 시험계획 공고	

○ 근무예정기관은 대구광역시(의회포함) 및 9개 자치구·군(의회포함)임.

- '23.7.1. 편입된 군위군 및 군위군 의회 포함

※ 직렬(직류)별 결원 현황에 따라 본인 희망지역 이외의 지역에 배치될 수 있음.

2. 시험 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
※ 배점 및 문항형식 : 매 과목 100점 만점, 과목당 20문제, 4지 선택형(1문항당 1분 기준)

나. 제3차 시험 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
※ 제1·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.

다. 수의연구사 및 수의7급 :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시험

○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 /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※ 제1차 시험 합격자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.

3. 응시 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(당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거나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나. 거주지 제한 :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.

[※ 단, 수의직7급·수의연구직은 거주지 제한 요건 미적용함(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 가능)]

- ① 2024. 1. 1.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 - ② 2024. 1. 1.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 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.
 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.
-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.

다. 응시연령

○ 18세 이상(2006. 12. 31.이전 출생자)

※ 기술계고(특성화고·마이스터고)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(2006.12.31.이전 출생자)이거나, 고교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(2007.12.31.이전 출생자) 해당자도 응시 가능

라. 응시에 필요한 자격(면허)증 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력 및 자격(면허)을 취득하여야 함.

시험명	직렬(직류)	직급	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자격(면허)증
제1회 임용 시험	수의연구직(수의)	연구사	• 수의사
제2회 임용 시험	사회복지직(사회복지)	9급	• 사회복지사 1·2·3급
	사서직(사서)	9급	• 1·2급 정사서, 준사서
	간호직(간호)	8급	• 조산사, 간호사
	시설직(지적)	9급	• 기술사(지적), 기사(지적), 산업기사(지적)
	수의직(수의)	7급	• 수의사
	의료기술직(의료기술)	방사선 물리치료	9급
제3회 임용 시험	보건연구직(공중보건)	연구사	• 보건학, 의학, 한의학, 치의학, 약학, 한약학, 간호학, 화학, 생물학, 식품학, 식품가공학, 수의학, 축산학, 낙농학, 동물학, 위생공학,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
	환경연구직(환경)	연구사	• 환경공학, 위생공학, 화학, 화학공학, 농화학, 환경화학, 도시계획학, 약학, 토목공학, 식품공학, 물리학, 천문학, 기상학, 지질학, 지리정보학, 산림자원학,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
	기술계고졸	9급	•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에서 직렬(직류)별 관련학과를 졸업(예정 포함)하고,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각급 대학 중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(사. 기술계고등학교 구분모집 참고) ※ 졸업자는 졸업일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사이 기간 1년 이내인 자

(1) 연구직에서 “전공한 사람”이라 함은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(전문대학 제외)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)으로서,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**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.**

※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

(2) ‘해당 학문 및 관련계통의 학문’의 해당 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(관련)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로 판단하며, 서류 내용에 ‘우리 대학(원) ○○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
(3) 연구직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(관련)학 전공증명 및 학(총)장의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.

(4) '학위취득'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.

(5) 자격(면허)증 원본 및 추천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.(수의연구, 수의7급, 기술계고졸은 별도 기간 제출)

마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함.

○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.

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어야 함.

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지원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(지원대상자)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.[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에도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어야 함]

※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시작시점 및 종료시점)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○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사회보장급여통지서(수급기간 등 명시) 등)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-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.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바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가능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.
-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.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사. 기술계고등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) 구분모집

- 지역요건 :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.
 - 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(졸업일과 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)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
 -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구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(졸업일과 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)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대구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- 임용예정 직렬·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, 그 중 50%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,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%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.5 이내인 사람을 추천 가능
-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·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% 이내인 사람을 추천 가능
- ※ 추천대상자(고졸자)는 기술계 고등학교(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)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이며, 대학중퇴자(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)도 포함

- ※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
- ※ 성적합산 기준은 졸업생은 고등학교 전학년,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~2학년 성적 기준
- ※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, 재학생은 2학년,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,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.

- 임용예정 직렬·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「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[별표9]의 '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'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,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학과는 '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49호)의 중 직무분야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,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음.

구 분	직렬(직류)	직급	관 련 학 과
기술계 고 졸	공업직 (일반기계)	9급	• 기계, 자동차(자동차정비), 운전, 판금, 용접, 배관, 기관, 인쇄공업,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(마이스터고 포함) 졸업(예정)자
	공업직 (일반전기)	9급	• 전기, 전자, 원자, 통신,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(마이스터고 포함) 졸업 (예정)자
경 력 쟁	시설직 (일반토목)	9급	• 토목(토목건설, 목공), 농업토목, 건축(건축설비) 관련과 특성화고 (마이스터고 포함) 졸업(예정)자

- 추천과 별도로 추천받은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.
- 최종합격자가 허위 학력 등 응시자격 미충족 및 응시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.

- ▶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: **2024. 6. 24.(월) ~ 6. 28.(금)** / 5일간, 09:00~18:00
- ▶ 제출방법 :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,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)
※ 응시자 개별제출 불가
- ▶ 제출장소 :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
(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11동 2층)
- ▶ 제출서류 : 추천 현황표, 학교장 추천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성적증명서(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상의 증명서 / 평균석차 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),
졸업(예정)증명서
- ※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 험 명	원서접수(인터넷)	시 구 험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 험 일	합격자 발표일	
제1회 임용시험	2. 26.(월) ~ 3. 1.(금) ※ 취소 : 2. 26.(월)~3. 4.(월)	서류전형	※ 3. 5.(화)까지 서류제출	3. 6.(수)	3. 8.(금)	
		면 접	3. 8.(금)	3. 14.(목)	3. 22.(금)	
제2회 임용시험	3. 25.(월) ~ 3. 29.(금) ※ 취소 : 3. 25.(월) ~ 4. 1.(월) ※ 추가취소 : 5. 27.(월) ~ 5. 29.(수)	필 기	5. 31.(금)	6. 22.(토)	7. 15.(월)	
		면 접	7. 15.(월)	8. 7.(수)~8. 9.(금)	8. 30.(금)	
		수의 7급	서류 전형	※ 4. 2.(화)까지 서류제출	4. 3.(수)	4. 12.(금)
			면접	4. 12.(금)	4. 25.(목)	5. 8.(수)
제3회 임용시험	7. 22.(월) ~ 7. 26.(금) ※ 취소 : 7. 22.(월) ~ 7. 29.(월) ※ 추가취소 : 10. 14.(월) ~ 10. 16.(수)	필 기	10. 18.(금)	11. 2.(토)	11. 22.(금)	
		면 접	11. 22.(금)	12. 12.(목)~12. 13.(금)	12. 27.(금)	

- ※ 시험장소 및 시간, 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gu.go.kr>)에 공고
- ※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직접 열람 가능
- ※ 수의연구사 및 수의7급 응시자 서류제출 : **붙임 수의연구사 및 수의7급 서류제출 안내 확인**

5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 수 처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

나. 접수시간 : 원서접수 시작일 09:00 ~ 마감일 18:00까지 24시간 운영

- ※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접속 후 개인별 접수
-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,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(☎1522-0660)로 문의하여야 함.

다. 응시수수료 : 7급·연구사 7,000원 / 8·9급 5,000원

- ※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결제, 카드결제, 계좌이체비용 등)이 소요됨.
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 함.

라. 응시수수료의 환불 : 응시원서 접수 후 취소기간 및 추가 취소기간 내 취소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함.

마. 응시원서 사진등록

-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, 규격은 3.5cm×4.5cm,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.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응시생 본인 얼굴의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해야 함.

바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재 착오, 누락,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.
 - ※ 응시자는 최종 제출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,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.
-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응시직렬(직류)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.
 - 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.
- 응시표는 원서접수(취소)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출력할 수 있음.
-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(장애인·임신부 등)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.
 - ※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제출 등은 붙임 “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”를 반드시 확인
-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.
-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.

6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(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)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구 분	토플(TOEFL)		토익(TOEIC)	텡스(TEPS)	지텔프(G-TELP)	플렉스(FLEX)
	PBT	IBT				
일 반	530	71	700	340	65(level 2)	625
청각장애	352	-	350	204	-	375

-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.3급)' 이거나,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.

※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붙임 “2024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안내” 필독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9.1.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.
- 2019.1.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(TOEFL),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(TOEIC),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(G-TELP)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.
-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 함.

※ 사전등록 대상 시험

- 토익, 텡스, 지텔프, 플렉스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- 토플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~10일 등록

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,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에도 응시원서 제출 시 영어성적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.

※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편 등으로 등록방법 변경시 추후 공고 예정
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.
-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.
[추가등록기간 : 2024.10.21.(월) ~ 2024.11.1.(금)]

◎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 공지사항 및 사전등록 방법안내를 참고할 것

7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(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)

가.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입력함.
※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.
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.
-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.
[추가등록기간 : 2024.10.21.(월) ~ 2024.11.1.(금)]

8.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

-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.
-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함.
 - ※ 위탁출제 과목 및 자체출제 과목은 붙임 “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자체출제 안내” 참고
-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, 고시,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. 다만,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.
 - ※ (예시)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4.6.22.인 경우, 2024.4.30.현재가 기준이 됨.
-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물리는 물리학 I, 생물은 생명과학 I 에서 출제되며,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됨.

9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

구 분		가산비율
취업지원대상자	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
자격증 소지자	직렬(직류)별 가산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
< 비고 > •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•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• 직렬별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•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'나 ~ 마' 참고		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-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-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으로 확인하여야 함.

다.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
-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-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- ※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(☎ 044-202-3255) 또는 구·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함.
-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'나'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.

라.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○ 행정직군

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
직 렬(직 류)	인정대상 자격증	가산비율
행 정(일반행정)	변호사, 변리사	5%
세 무(지 방 세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
사회복지(사회복지)	변호사	

○ 기술직군(자격·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)

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

구 분	7급, 연구사, 지도사		8·9급	
	기술사,기능장,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기능장,기사,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	5%	3%

※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.

※ 직렬(류)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「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[별표7의 4]에 의함.

※ 2024년부터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됨.

마.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(10% 또는 5%)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(5% 또는 3%), 직렬별 적용 가산점(5% 또는 3%)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함.
- **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**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**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**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.
- **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음.**
- 자격증 종류, 자격번호,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.

10. 합격자 결정기준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

- (공개경쟁임용시험)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%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.
- (경력경쟁임용시험)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하고,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%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.
- ※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.
- ※ 선발예정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10% 범위내 적용

나.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결정

-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-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함.
-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시험의 평정 결과에 따라 결정함. ※ 면접시험 시행계획 별도 수립
-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면접시험 시행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.

11.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가. (대상시험)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

나. (채용목표)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%

※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

다. (채용방법)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%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 3점(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- 3점을 곱한 점수) 이상인 해당 성(性)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.

※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.

12.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

가. (실시대상)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

나. (실시방법)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 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음.

13.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.
-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서 출력할 수 있음.
- 응시자는 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.
- 답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, 그 외 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답안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작 후 불필요한 자료 및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.
-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DA, 무선호출기, 이어폰 등) 및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, 통신 및 전산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,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.
-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.
-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.

- 기술계 고등학교(특성화고·마이스터고)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중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 이전까지 대학에 재학·휴학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.
 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.
 -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시험 종료 후 따로 반환하지 않음.
 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daegu.go.kr>) '시험 정보'란에 공고함.
- ※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**공고문 외 붙임 안내 자료까지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(☎ 1522-0660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그 외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(☎ 053-803-2771~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